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관람자 확인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요청〉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915호)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부정판매 정의 정비 및 신고포상금(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7조의2)	2
2. 관람자 확인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요청(안 제5조의2 신설)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2. 20.
3. 회 부 일 : 2026. 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분기 기준 대중음악 공연은 총매출 1,539억 5,208억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공연은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생활로 발전하였음.

그러나 일부 공연의 경우, 입장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여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또한, 공연 암표 근절을 위해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다시 세우고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제5조의2, 제37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부정판매의 정의 정비 및 신고포상금(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7조의2 신설)

개정안은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의 정의를 기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넘은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로 변경하고(안 제4조의2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37조의2).

현행	법률 제21397호 「공연법」 (2026. 8. 28. 시행)	개정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 「정보통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 ----- ----- ----- ----- ----- ----- -----

현행	법률 제21397호 「공연법」 (2026. 8. 28. 시행)	개정안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 장권등을 <u>상습 또는 영 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u>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신설</u>〉	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 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 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 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 입장권등 을 판매하거나 그 판 매를 위탁받은 자(제 1호에 따른 최초 판 매자를 포함하며, 이 하 “입장권등을 판매 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u>상습 또는 영업 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을</u> 넘은 금액으로 입 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	----- <u>영리를 목적으로 입장 권등의 판매 정가를</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신고포상금)

현 행	법률 제21397호 「공연법」 (2026. 8. 28. 시행)	개 정 안
	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공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발의 당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등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부정판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26. 1. 29.)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의2제1항과 시행예정인 법률 제21397호 「공연법」(이하 “**시행예정공연법**”이라 함)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2151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2025.11.28., 법사위 의결 2025.12.10., 본회의 의결 2026. 1.29., 2026. 2. 27. 공포)

부정판매의 정의에 따른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입장권등을 다른 사람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입장권등의 판매정가를 넘은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행위”로 변경하고 있음.

현행법 제4조의2제2항²⁾과 시행예정공연법 제4조의2제1항³⁾은 각각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41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따라서,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2)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 법률 제21397호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됨.

상습범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에 인정⁴⁾되고, 영업범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일련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범죄유형⁵⁾이므로, 단순히 1회에 한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는 상습범·영업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움.

그런데, 개정안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를 ‘영리를 목적으로’로 변경함으로써 1회에 한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도 영리 목적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판매 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율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하여 국민들의 공연관람기회를 축소시키고, 소득수준별 문화예술 관람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암표거래’를 보다 실효적으로

4)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5)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표의 경우 판매가격만 알 수 있을 뿐 판매자가 당초 구입한 가격을 알기 어려워, 신고·단속·적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표 판매의 기준에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입장권 판매 정가”로 개선하라고 권고⁶⁾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부정판매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과 동일하게 부정판매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⁷⁾의 논의과정에서,

부정판매의 정의를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안⁸⁾이 논의되었음.

그러나,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판매 정가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등의 의견⁹⁾을 제출하였고,

6) 국민권익위원회,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2024. 8. 26.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안번호 22151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2025.11.28., 법사위 의결 2025.12.10., 본회의 의결 2026. 1.29.)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275)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의견에 따라 부정판매의 정의에 대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부정판매의 정의를 규정하기를 요청하여 법률 제21398호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제2항이 개정된 바 있으며¹⁰⁾, 시행예정공연법 제4조의2제1항에서도 부정판매 정의를 동일하게 규정하게 되었음.

한편, 시행예정공연법 제37조의2는 입장권 부정판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음.

개정안 제37조의2제2항은 포상금 지급 근거와 아울러 신고가 공연이전인지 이후인지 구분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연 실시 이전에 신고가 접수되어 입장권등 부정판매 행위를 적발하게 되면 티켓 재판매 시장에서 입장권등의 가격이 하락하여 경제주체 전체의 효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공연 실시 이후라도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행위를 제재하게 될 경우

9) 판매 정가에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 정가 초과 거래 금지시 해당 거래가 해외 플랫폼 및 비공개 채널로 이동해 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및 국내 거래 플랫폼 역차별 문제 발생이 우려됨.
사단법인 온라인쇼핑협회, 2025. 11.

10) 제429회 국회 정기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2015. 11. 18.) 회의록, p.3.~13.

불법행위의 은폐를 막고, 제보를 활성화하여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공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37조의2제3항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별도의 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¹¹⁾를 보았을 때 이러한 규정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므로 시행예정공연법 제37조의2를 개정안과 같은 형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판매의 목적 및 가격기준을 영리 목적과 판매정가로 하고 부정판매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행예정공연법이 시행된 후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한계를 모니터링 하여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람자 확인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요청(안 제5조의2 신설)

개정안 제5조의2는 공연자가 공연장 입장 등과 관련하여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려는 경우(제1항제1호),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제2호) 등에 한정하여 관람자의 개인정보 요청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조의2(관람자 확인 등) ① 공연자는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하여 관람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u> <u>1.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려는 경우</u> <u>2. 범죄 또는 안전사고 등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람자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u> <u>3. 그 밖에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하여 본인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관람자 정보의 범위와 요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5조제1항¹²⁾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¹³⁾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유해공연물을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5조제4항은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 「공연법」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②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 해당하는 선전물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하거나 붙이거나 배포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관람을 권유하는 등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공연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1항의 공연물 및 제2항의 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3) 「청소년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청소년 유해공연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대다수의 공연은 입장권등의 암표거래 및 불법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연장 입장권등의 실명 예매를 원칙으로 하며 공연장 입장시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있음.

공연티켓 예매 업계와 주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따르면 공연장 입장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본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캡처 불가), 외국인 등록증이며,

은행 및 포털사이트에서 발급된 민간 인증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정보식별이 불가능한 신분증은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학생증의 경우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원본(실물)을 함께 지참할 경우 본인 확인이 가능함.

이와 같이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이 엄격한 상황이어서 한 학생이 학생증만 제시하였다가 공연을 보지 못하자 경찰을 통하여 직접 신원을 확인했음에도 입장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¹⁴⁾

또한, 공연장 입장시 신분확인을 하는 공연장 관계자가 개인정보의 침해 소지가 있는 과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¹⁵⁾ 뿐만 아니라 정부위원회 국정감사¹⁶⁾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¹⁷⁾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생기부까지 요구? 선 넘은 아이돌 공연 본인 확인’, 뉴스1, 2025. 7. 26.

15) ‘2025년도 국정감사(10.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p. 146.

16) ‘2025년도 국정감사(10.14.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회의록, p. 43~44.

1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 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자가 공연장 입장 및 관람과 관련하여 관람자의 개인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연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연 관람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¹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공연자가 입장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권 등의 본인 구매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45)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자가 관람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본인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인정보 확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급변하는 기술(NFT 티켓, 생체인증 등)을 활용한 현장의 신속한 압포방지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람자·공연자

18)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2010헌마446, 2012. 7. 26. 선고]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대중골프장업, 여행업, 호텔업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자율규제단체 참여사를 위한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에 따라 업종별로 개인정보 처리를 자율규제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19)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제4호)에 허용하고 있어 개정안과의 상충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19)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